

붙임3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

※ 수도권 8.19. 0시, 수도권 외 지역 8.23. 0시(학교는 8.26일)부터 시행
 수도권 식당·카페 운영 제한, 학원·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.30일 0시부터 시행

구분	조치사항		
	수도권	비수도권	
집합·모임·행사	○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		
스포츠 행사	○ 무관중 경기 전환		
다중이용시설	공공	○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	
	민간	○ 고위험시설 12종*(유통물류센터 제외) 운영 중단 *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 **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	
		○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 21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	○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(12종*)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 * 학원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 150㎡ 이상)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 **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
		○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·배달만 허용	
		○ 학원(10인 이상)·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	
○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 * 교습소(10인미만 학원), 오락실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·사우나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			
	○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 *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		
	○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·휴원 권고 *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		
학교	○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(8.26~)	○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·군·구 원격수업 전환 ○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	
기관, 기업	공공	○ 유연·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(예 : 전 인원의 1/2)	
	민간	○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	